

축산물품질평가원 공고 제2023-100호

2023년 하반기 신규직원 운영직(다급) 채용공고

축산물품질평가원은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을 과학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축산물등급판정업무와 생산에서 소비까지 전(全)단계를 관리하는 축산물이력제사업, 축산물유통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미래를 함께 열어 갈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축산물품질평가원장

2023년도 하반기 신규직원 운영직(다급) 채용공고

1 채용분야 및 내용

직군(직급)	구분	인원	업무내용[붙임1 참조]
운영직(다급)	사무보조	1명	• 문서관리 및 축산물등급판정, 축산물이력제 및 축산물 유통사업 등 기관 사업과 관련한 행정업무 보조
	상담 (시간선택제, 6hr/일)	1명	• 기관사업 관련 전화상담 및 행정업무 보조

2 근무조건

구분	사무보조	상담
채용인원	1명	1명
근무지	본원 (세종특별자치시 아름서길 21)	충북지원 (충북 음성군 삼성면 상곡로 45)
임용일(예정)	2024. 1. 2.(화)	
근로형태	무기계약직(수습 3개월 후 정식임용)	
근무시간	전일제(주 40시간, 일 8시간 근무)	시간선택제(주 30시간, 일 6시간 근무)
보수 및 복리후생	사규에 따름(신규직원 초임은 알리오(ALIO) 공시자료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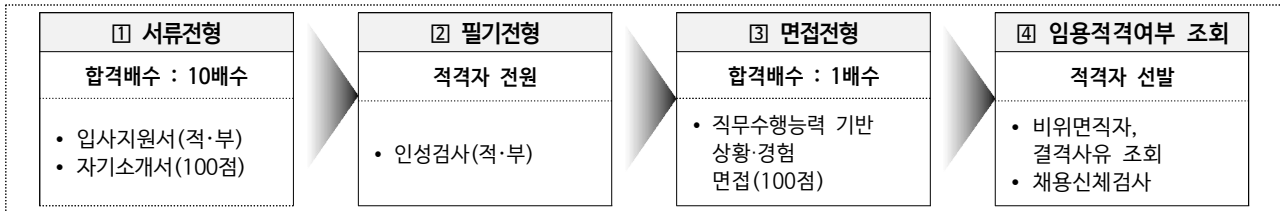
- ※ 1. 임용일은 경력자의 경우 행정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조정될 수 있음
2. 운영직(사무보조)의 최초 근무지는 본원(세종)이며, 수습기간 이후 연고지 및 부서별 인력수급현황을 고려하여 근무지 배치
3. 운영직(사무보조)의 근무시간은 9:00~18:00, 운영직(상담)의 근무시간은 9:00~16:00이며, 근무지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및 결격사유

구분	내용
응시 자격	• 성별, 연령, 전공 등 제한 없음(단, 기관 정년[만 60세]에 도달하는 자 제외) • 임용 예정일(2024. 1. 2.) 즉시 근무 가능한 자
결격사유	• 「인사규정」제22조 및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붙임2 참조]

4

전형절차 개요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채용상담 안내]

- 일시 : 연중 상시운영
- 방법 :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접속
- 내용 : 2023 축산물품질평가원 신규직원 채용 전반 Q&A 답변
- 경로 : 카카오톡 실행 → 채팅 탭 내 우측 상단 말풍선 → '새로운 채팅'화면 → 우측 상단 '오픈 채팅' → '2023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정보 공유방' 검색 후 채팅방 입장

5

전형절차 세부사항

전형	평가기준 및 배점	선발배수	합격자 기준 및 동점자 처리기준
서류	• 입사지원서(적·부) • 자기소개서(100점)	10배수	• 응시자격 적격자 중 자기소개서 평가 40점 이상 고득점자 순 ※ 동점자 전원 합격 처리,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는 서류전형 부적격 처리함
필기	• 인성검사(적·부)	적격자 전원	• 인성검사 적격자
면접	• 직무수행능력 기반 상황·경험 면접(100점)	선발인원 1배수	• 면접평점 60점 이상인 자 ※ 동점자 처리 ① 취업지원대상자 ② 장애인(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 지역인재(이전지역 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순) ④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임용적격여부 조회	• 비위면직자, 결격사유 조회 • 채용신체검사	적·부	• 적격자 선발

- * (면접전형 예비합격자) 면접전형 참여 포기자 발생 시 서류전형(자기소개서) 고득점자 순 최대 5순위까지 예비합격자를 선정(인성검사 과락자 제외)
- * (임용 차순위자) 최종합격자가 입사를 포기하는 등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차순위자를 임용, 차순위자 유효기간은 최종 합격자 임용일로부터 6개월

□ 전형별 세부 평가요소

구분	내용
필기전형	인성검사
면접전형	태도, 직업윤리, 대인관계능력 등의 인성전반 평가 직무수행능력 기반의 경험·상황면접으로 직무 및 조직적합도 평가

※ 인성검사 문항 수는 출제기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6

가점 및 우대사항

□ 서류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적 인력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저소득층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만점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의 자녀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이전지역인재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고졸자	기관 내규에 따른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자격 증	공통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만점의 2%
		IT 정보처리기사, 컴퓨터활용능력 1급 정보처리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 2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만점의 3%
			만점의 1%
	직무	축산 축산기사 축산산업기사 축산기능사, 식육처리기능사	만점의 5%
			만점의 4%
			만점의 3%
		행정 행정관리사 1급, 회계관리 1급, 경영지도사 전산회계 1급, 유통관리사 1급	만점의 5%
			만점의 4%
		데이터 빅데이터분석기사 ADsP(빅데이터분석 준전문가)	만점의 4%
			만점의 3%
		상담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2급	만점의 4%
			만점의 3%
직무 경험	축산물품질평가원 체험형 청년인턴 ※ 공공데이터 청년인턴(일경험 수련생), 현장실습생 제외	우수인턴	만점의 5%
		수료자	만점의 3%
	대학생축산물품질평가대회 입상자 ※ 2019년 대학생 가치드림 프로그램 입상자 포함 ※ 2023년 대학생 축산유통 경진대회 입상자 포함	대상	만점의 3%
		최우수 이하	만점의 1%
	축산물품질평가원 서포터즈 ※ 2020년도 이후 입상자 및 수료자 대상	입상자	만점의 3%
		수료자	만점의 1%

□ 필기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적인력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 면접전형 가점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사회 형평적인력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만점의 5% 또는 10% ※ 국가유공자법에 따름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경증:만점의 5% 중증:만점의 7%
	경력단절여성	임신·출산·육아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상 경력이 단절된 여성(현재 무직)	만점의 3%

□ 최종합격자 결정 시 동점자 우대

구분		세부내용		가점비율	
우 대	①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동점자 우대 (순서 : ①~④)	
	②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증장애인, 경증장애인 순)			
	③ 지역 인재	이전지역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충청권(대전·충북·충남·세종)이며 졸업(예정)인 자		(이전지역, 비수도권 순)
		비수도권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소재지가 지방(비수도권) 대학이며 졸업(예정)·중퇴·제적·재학·휴학한 자		
	④ 서류심사(자기소개서) 점수가 높은 자				

〈가점 부여 상세 기준〉

1.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은 대상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2. 취업지원대상자 가점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용함
3. 이전지역 지역인재 및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상세 내용은 [붙임3] 참고
4. 기관 내규에 따른 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아래와 같음

○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그에 상응하는 지식, 학력,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

1. '23년 8월 기준 고등학교 졸업인 자
2. 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자 및 대학 중퇴자 및 재학·휴학자 포함
3. 대학졸업자 또는 대학졸업예정자 등은 고졸자에서 제외

5. IT 및 직무 자격 가점은 각각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하며, 자격사항 가점 총점은 만점의 10%
6. 직무경험 가점은 항목별로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가장 유리한 1개의 가점만 부여
7. 체험형 청년인턴 수료자의 경우 채용공고상의 근무기간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만 인정(개인 사정으로 인한 중도 퇴사의 경우 인정하지 않음)

7
전형일정

전형단계	일정	비고
채용공고 및 접수	(공고) 10. 10.(화) ~ 10. 25.(수), 18시까지 (접수) 10. 17.(화) ~ 10. 25.(수), 18시까지	-
서류 합격자 발표	11. 1.(수)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증빙서류 제출	11. 1.(수) ~ 11. 3.(금), 14시까지	-
필기 대상자 발표	11. 13.(월)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필기전형	11. 18.(토)	• 필기장소 : 별도공지
필기 합격자 발표	11. 23.(목)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면접	11. 27.(월) ~ 11. 28.(화)	• 면접장소 : 별도공지
최종합격자 발표	12. 1.(금)	• 채용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신체검사 및 기초서류제출	12. 4.(월) ~ 12. 7.(목), 14시까지	• 신체검사는 채용신체검사서로 대체하며 서류는 채용홈페이지 업로드
임용	2024. 1. 2.(화)	• 경력자의 경우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임용일이 조정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방식) 축산물품질평가원 채용홈페이지 조회 및 개별통보

※ 상기 일정과 장소 및 채용방식은 국가적 상황 및 천재지변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8
제출서류 안내

전형단계	대상	제출서류	제출대상 및 용도	비고
서류전형	공통	•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서류심사용	• 온라인 접수
증빙 서류제출	해당자	• 장애인증명서 ※ 중증은 중증장애인확인서 함께 제출	• 장애인 대상자	• 서류제출 기간 내 온라인 업로드 • 직무경험 가점 대상자는 기관 내 데이터로 진위 여부 확인이 가능하므로, 별도의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저소득층 대상자	
		• 국적취득사실 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다문화 가정 대상자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북한이탈주민 대상자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경력단절여성 대상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고졸자 대상자	
		• 이전지역 소재 최종학력 졸업(예정) 증명서	• 이전지역 인재 우대사항 입력자	
		• 비수도권 소재 최종학력 증명서 (졸업(예정)중퇴·제적·재학·휴학 증명서)	• 비수도권 인재 우대사항 입력자	
		•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등	• 경력사항 입력자	
		• 자격증 취득 증명서(사본 등)	• 자격증 입력자	
결격사유 조회	군경력자	• 주민등록초본	• 병역사항 확인	• 주민등록번호(13자리) 모두 표시되도록 발급하여 제출
	공통	• 주민등록등본	• 비위면직자 조회	
		• 기본증명서(상세)		
		• 채용신체검사서 또는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	• 결격사유 확인	

- ※ 제출서류는 **공고일('23.10.10.) 이후** 발급분만 인정. 단, 발급일이 무관한 서류는 제외
- ※ 증빙서류 미제출, 불일치, 증빙 확인 불가 시 허위사실 기재로 판단 및 탈락 처리될 수 있음을 유의
- ※ 제출서류 내 원본 확인 번호를 통해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원본 확인 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 제출(예: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등)
- ※ 증빙서류 미제출시 필기시험 응시 불가하며, 세부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 ※ 제출서류는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활용, 평가위원 미제공

〈 공공기관 공정채용 가이드('23.5월) 〉

○ 제출서류 요구 : 지원자의 증빙자료는 합격자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항목에 한해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이후**에 최소한으로 제출하도록 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해서는 안됨**

1. 장애인, 취업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해당 증명서는 반드시 정부 24(www.gov.kr) 또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발급 가능
2. 중증장애인은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제출
 - * (방문발급) 장애인고용공단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 제출하여 발급
 - * (온라인발급) 장애인직업능력포털에서 회원가입 후 발급
3. 경력단절여성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 자격상실일이 공고일('23.10.10. 포함) 기준 3개월 이전이어야 함

9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블라인드 채용 안내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에 블라인드 위반사항 기재 시 '부적격' 처리

※ 입사지원서 상 경험 및 경력사항 기재 시 타 기관·업체명 기재 가능하며 학교명은 기재 불가

※ 자기소개서 상 경험 및 경력사항 기재 시 타 기관·업체명 및 학교명은 기재 불가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검토사항 〉

- 불성실 기재(비속어 사용, 동일답변 반복, 회사명 오기입, 분량부족(50자 미만), 블라인드 위반) 확인
 - 블라인드 위반(개인 인적사항[성명, 성별, 연령, 출신지역, 출신학교, 가족관계 등의 편견요소]) 확인

항목	위반 예시
성명	자기소개서에 성명을 기재할 경우 위반 / (예시) 동아리 살림꾼 '홍길동'
성별	지원자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군대 의무 복무 시절, 00병 경험을 통해 / 군수병·전경·행정병·조리병으로 복무하며 / 결혼 후 남편과 함께 / 00여대를 졸업하고 / 여성과학기술인 사업을 지원받으며 / 동아리 활동 중 친한 형(누나, 언니)에게 / 장남으로 태어나 / 경력단절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생년월일, 연령	지원자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88년 올림픽이 개최된 해에 태어나 / 2019년 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출신지역	출신지역을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우리나라 수도에서 태어나 / 대구에서 태어나 / 서울에서 초등학교를 다닐 때
출신학교	지원자의 출신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예시) 00대학교 장학금 수상 / 00대학교 회장 / 00대학교 조교 / 00대학교 LINC 사업단 / 00대학교 학생연구원 / 재학시절 00대 총장상을 수상 / 'SNU 발표와 토론' 수업을 수강
가족관계	가족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할 경우 위반 / (예시) 교직생활을 하시는 부모님 아래에서

※ 부득이 기재가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 인적사항을 유추할 수 없도록 블라인드 처리하여 기재(00대학교에서 기계 관련 전공을 통하여 / 00대학 연구소에서 연구를 진행)

※ 현주소, 메일주소 작성 시 학교명 및 직장이 간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

- 허위사실 기재(직무경험 가점 관련 허위사실 기재) 확인

- 기타(평가항목 중 공란 또는 작성 분량의 50자 미만 작성, 의미없는 문자의 나열, 동일 내용 문구 반복, 기관 명칭 오기입[타기관 지원] 등) 확인

10 채용비리 구제방법 및 이의신청 안내

□ 피해자 구제방법

- 단계별 성적순에 따라 적격자* 전원 예비순번 부여

* 적격자: 과락, 전형 불참, 서류 미제출 등의 부적격 사유가 없는 자

- 부정청탁 등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 발생 시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예비순번에 따라 구제

□ 이의신청

- 접수기간

- (서류) '23. 11. 1.(수) ~ 11. 3.(금), 3일간
- (필기) '23. 11. 23.(목) ~ 11. 24.(금), 2일간
- (면접) '23. 12. 1.(금) ~ 12. 15.(금), 15일간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 이의신청메뉴에 신청내용 기재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가 아닌 경우에 한해 이의제기 내용을 검토 후 답변

〈 이의신청 처리 예외사유 〉

- 채용시험과 무관한 문의 및 질의사항
-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외부 출제기관)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
- 기타 상기 사유에 준하는 사항

11 채용서류의 반환

- 제출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동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반환청구기간 내에 청구된 반환청구분에 한하여 반환하며,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는 채용서류 반환이 불가

- (청구기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90일까지

- (청구방법) 최종합격자 발표 후 최종합격이 되지 않은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9]를 작성하여 메일(recruit@ekape.or.kr)로 신청

* 채용서류 반환 신청서 접수 시 14일 이내 송부

- (청구대상) 전자서류를 제외한 제출 서류
- (반환방법) 등기우편물 또는 직접 방문수령

12 기타

- ❑ 지원서 허위작성 또는 기재착오, 기재누락, 증명서 위·변조, 기한 내 서류 미제출자, 부정행위, 연락 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불합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 ❑ 지원마감 시간에는 지원자의 동시접속으로 시스템이 불안정 할 수 있으니 접수기간 내 미리 지원서 작성 및 최종 제출을 바람(접수마감시간 연장 없음)
- ❑ 채용공고는 우리원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우리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통보 함
- ❑ 동일 공고기간 내 진행 중인 다른 분야 채용에 중복지원 불가하며,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탈락처리
- ❑ 축산물품질평가원 「인사규정」제22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1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채용 업무지침」제22조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임용되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됨
- ❑ 전형단계별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 임용 이후라도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 ❑ 기타 문의사항은 인재개발처(☎ 044-410-7202~7)로 문의

[붙임1] 직무기술서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서 - 사무보조

채용분야		사무보조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인사		03. 일반사무	01. 총무, 02. 사무행정
기관주요사업	○ 축산물품질평가,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공정평가, 조사/연구,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지원, 축산컨설팅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기타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핵심책무	○ (사무행정) 문서작성, 예산운영, 데이터관리, 사무자동화 관리 운용 등 조직 내부와 외부에서 요청하거나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고 관리			
직무수행내용	○ (사무행정) 문서기안 절차, 문서의 체계, 문서작성 규칙, 문서관리 규정, 조직도 이해, 보안규정,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매뉴얼,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 매뉴얼, 프레젠테이션 프로그램 매뉴얼,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매뉴얼, 기본 회계지식, 회계규정, 회의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운영매뉴얼, 사무기기운용 매뉴얼 ○ (총무)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복리후생 등을 실행하며, 원활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며 실행 ○ 기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요구하는 사항			
전형방법	○ 서류접수 → 필기시험(인성검사)→ 면접전형 → 임용(수습 3개월)			
일반요건	연령	무관(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만 60세 이하인 자)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문서양식과 유형, 증명서 발급절차, 자료정리 분류, 문서관리규정, 회의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운영매뉴얼, 회의실 배치도,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 요구, 사무기기 운영 매뉴얼, 비품, 소모품의 종류, 비치된 물품의 종류 등			
필요기술	○ 업무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응대 기술, 고객요구 분석기술, 문제상황 분석기술, 대응매뉴얼 개발 및 수정 능력 ○ 문서기안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화 작업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무기기 활용능력, 인트라넷 사용 기술			
직무수행태도	○ 고객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 원활한 의사소통 창출을 위한 의지와 책임감 ○ 회사규정과 관련법규 준수하는 태도 및 청렴성			
필요자격	○ 채용공고문 참조			
직업기초능력	○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홈페이지→NCS·학습모듈검색			

NCS기반 채용 직무설명서 - 상담

채용분야		상담		
분류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02. 경영·회계·사무	02. 총무·인사		03. 일반사무	01. 총무, 02. 사무행정
20. 정보통신	02. 통신기술		03. 통신서비스	05. 전신서비스
기관주요사업	○ 축산물품질평가, 축산물이력제, 축산물품질공정평가, 조사/연구, 축산물유통실태조사, 우수축산물브랜드 인증 지원, 축산컨설팅 및 교육·홍보, 국제교류, 기타 정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및 부대사업			
핵심책무	○ (상담) 기관 축산물 이력제 사업 전반의 지식을 습득하고, 고객 문의사항에 대해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제공 업무 수행 및 사후 관리			
직무수행내용	○ (상담) 축산물이력제 전반의 전화 상담 및 신고 접수, 가축 및 축산물식별대장관리 작성 및 변경신고 관리, 원격지원을 이용한 시스템 사용방법 안내 및 오류 접수, 축산물 이력제 신고 정확도 및 고객만족도 강화 활동, 축산물이력제 업무처리 및 특이건에 대한 보고서 작성, 고객의 호감도를 높이기 위해 고객 요구사항을 파악, 대응,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고객요구사항 이력을 관리 ○ (총무) 직원들이 원활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업무환경을 조성하고 복리후생 등을 실행하며, 원활한 조직관리가 되도록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며 실행 ○ 기타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요구하는 사항			
전형방법	○ 서류접수 → 필기시험(인성검사)→ 면접전형 → 임용(수습 3개월)			
일반요건	연령	무관(우리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년 만 60세 이하인 자)		
	성별	무관		
교육요건	학력	무관		
	전공	무관		
필요지식	○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확인하고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능력 ○ 이용자의 정보내용을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분류, 관리할 수 있는 정보 관리지식 ○ 문서양식과 유형, 증명서 발급절차, 자료정리 분류, 문서관리규정, 회의에 사용되는 물품과 장비 운영매뉴얼, 회의실 배치도, 회의 진행에 필요한 자료 요구, 사무기기 운영 매뉴얼, 비품, 소모품의 종류, 비치된 물품의 종류 등			
필요기술	○ 업무용 소프트웨어, 인터넷 등을 활용할 수 있는 기술 ○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고객응대 기술, 고객요구 분석기술, 문제상황 분석기술, 대응매뉴얼 개발 및 수정 능력 ○ 문서기안 능력, 컴퓨터 활용능력, 문서화 작업능력, 의사소통 능력, 사무기기 활용능력, 인트라넷 사용 기술			
직무수행태도	○ 고객의 요청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 및 신속하고 정확한 업무처리 ○ 원활한 의사소통 창출을 위한 의지와 책임감 ○ 회사규정과 관련법규 준수하는 태도 및 청렴성			
필요자격	○ 채용공고문 참조			
직업기초능력	○ 자기개발능력, 문제해결능력, 대인관계능력, 조직이해능력, 직업윤리, 의사소통능력			
참고사이트	○ www.ncs.go.kr홈페이지→NCS·학습모듈검색			

[붙임2] 결격사유

「인사규정」 제22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병역의무불이행자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라 비위면직자 등으로 취업을 제한받는 사람
 11.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사람
- ②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용 전 파렴치 범죄, 폭력 및 경제관련 범죄, 그 밖에 불량한 범죄를 범하여 직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임용하지 아니한다.

「직원채용 업무지침」 제13조(신체검사) ① 원장은 신체검사에 불합격 판정을 받은 사람을 채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12호·제15호 및 제17호에 따른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의사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축산물품질평가직 지원자 중 색각이상자는 신체검사 합격 판정을 받았더라도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1. 9. 1.>
- ③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채용신체검사서를 징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무상 특정 신체검사가 필요치 않은 경우 채용 건강검진 대체 통보서를 징구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3.>

[붙임3] 우대사항

1.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장애인

제3조(장애인의 기준) ①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확인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2.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장애 진단 자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장애 정도에 관한 정밀심사 자료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전단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취업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제29조(취업지원 대상자 등) ①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취업지원 대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공상공무원, 특별공로상이자 및 특별공로자
2.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배우자
3.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4. 전몰군경, 순직군경, 4·19혁명사망자, 순직공무원 및 특별공로순직자의 자녀
5.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및 특별공로상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이등급 이상으로 판정된 사람의 자녀 및 재일학도의용군인의 자녀

3.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4.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로 동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급받은 수급자 증명서 제출이 가능한 자

제40조(수급자 증명서의 발급) 수급자 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법 제7조제1항제4호의 교육급여인 경우에는 시·도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신분증명서를 제시하거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급자는 정보통신망이나 무인(無人)민원발급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1. 수급자: 본인의 신분증명서(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2. 수급자의 친권인, 후견인 등 수급자의 위임을 받은 사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 및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5.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해당하는 자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 「국적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6. 비수도권 지역인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수도권 지역인재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3. “고등교육혁신특화지역”이란 규제특례를 통하여 지방대학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지역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대학(전문대학 포함)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 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제적한 자 또는 재학·휴학 중인 자

○ 비수도권 지방학교의 범위

-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상의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단국대 천안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상명대 천안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홍익대 세종캠퍼스, 고려대 세종캠퍼스, 건국대 글로벌캠퍼스 등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 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학교 및 국내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 그 외의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

- 최종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7. 이전지역 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이전 지역 지역인재(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 일부 발채)

가. 이전 지역인재의 개념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의 광역시·도,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지역 학교”라 함)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지역인재의 범위

- 해당 이전지역(대전·충북·충남·세종)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고등학교(이하 이전 지역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

* 대학 졸업예정자는 4년(=8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 이상 등록하고, 최종 학기 수강신청 학점을 포함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이전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학교의 범위

- 해당 이전지역(대전·충북·충남·세종)에 소재한 학교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인 경우는 분교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예시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이전지역학교에 해당함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학교에 해당하지 않음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 24조상의 분교가 마님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3) 「국립대학법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울산과학기술대학교 및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1) 본교가 이전지역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전지역 외의 지역대학

(2) 외국학교 및 국내에 있는 외국학교의 분교

(3) 사이버대학, 디지털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4)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가.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다.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라.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제지에 관계없이 제외

8. 경력단절여성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붙임4] 입사지원서

입사지원서

※ 입사지원서에 기재하는 모든 사항은 증명 가능한 사실이어야 합니다.

1. 인적 사항

* 인적 사항은 필수항목으로 반드시 모든 항목을 기입해주시시오.

지원분야		지원구분	신입() 경력()
성명	(한글)	비상연락처	
현주소		핸드폰번호	
		이메일	
응시자격 확인	☐ 만 60 세 이하		
우대사항	☐ 장애대상 ☐ 보훈대상 ☐ 지역인재 ☐ 경력단절 여성		

2. 자격 사항

* 자격은 직무와 관련된 국가공인 기술/전문/민간 자격을 의미합니다. 해당 자격증을 정확히 기입해 주십시오.

자격증명	발급기관	취득일자

3. 경험 혹은 경력사항

* 경력은 금전적 보수를 받고 일정기간 동안 일했던 이력을 의미합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그 외 모든 경력사항은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근무기간	기관명	직위/역할	담당업무

4. 직무관련 기타 활동

* 직무관련 기타 활동은 직업 외적인(금전적 보수를 받지 않고 수행한) 활동을 의미하며, 팀 프로젝트 활동, 연구회 활동, 동아리/동호회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 활동, 재능기부 활동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지시에 따라 해당되는 내용을 기입해 주십시오.

- [, ,]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 ,]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예’라고 응답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아래에 기입해 주십시오.

활동기간	소속조직	주요역할	활동 주요내용

※ 채용분야별 편집하여 입사지원 페이지 구성 예정

[붙임5] 자기소개서

자 기 소 개 서

1. [자기개발능력] 최근 5년 동안에 귀하가 성취한 일 중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 귀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500자 내외)

* 다른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

2. [문제해결능력] 예상치 못했던 문제로 인해 계획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끝까지 업무를 수행해내어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경험이 있으면 서술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3. [대인관계능력] 약속과 원칙을 지켜 신뢰를 형성/유지했던 경험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500자 내외)

4. [조직이해능력] 우리 기관에 입사 지원한 동기 및 입사 후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를 다른 사람과 차별화 된 본인의 역량과 결부시켜 작성해 주십시오. (500자 내외)

5. [직업윤리] 직장인으로서의 직업윤리가 왜 중요한지 본인의 가치관을 중심으로 설명하십시오. (500자 내외)

6. [경험 혹은 경력사항] (2,000자 내외)

- 입사지원서에 기술한 경력 및 직무관련 기타 활동에 대하여 상세히 기술
- 구체적으로 본인이 수행한 활동내용, 소속조직이나 활동에서의 역할, 활동결과 등 작성

[붙임6]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직원 채용을 위해 관계법령(「개인정보보호법」 및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최종학력, 경력, 이수한 교과과정,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결정일로부터 90일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민감정보 처리 내역

항 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국가보훈 및 장애 관련 정보	채용절차 진행 및 채용 지원자격·우대사항 확인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여부 결정일로부터 90일 (단, 확정된 채용대상자는 내부 인사관리를 위해 준영구보유)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감정보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자	제공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증명서 생성(발급)기관	이름, 생년월일, 학력, 경력, 기술 자격증 및 전문 면허증, 이수한 훈련 프로그램	제출서류의 진위여부 확인	진위여부 확인 소요 기간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원활한 채용심사를 할 수 없어 채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채용절차 진행 및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위의 내용에 대해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장 귀하

[붙임기] 서류심사

서류 심사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입사지원서 심사		적격	부적격	사유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 여부		적격	부적격 (불성실 기재)	사유
자기 소개 서	구 분		주요 관찰사항	평정점수
	일반 문항	자기개발	○ 본인이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한 행동증거의 구체성	/ 12점
		문제해결	○ 문제가 발생한 상황의 구체성 및 이를 해결하기 위한 행동증거의 구체성	/ 12점
		대인관계	○ 신뢰를 형성하고 유지하기 위한 가치관(생각) 또는 행동증거 표출의 구체성	/ 12점
		조직이해	○ 기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원한 동기와 실천하고자 하는 목표의 구체성 및 명확성	/ 12점
		직업윤리	○ 직장인으로서 직업윤리의 이해정도 및 본인의 가치관과 결부한 효과적인 표현여부	/ 12점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 지원한 직무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태도에 대한 설명의 구체성, 역량의 정도, 지원한 직무와 연관하여 본인의 경험과 경력 효과적인 기술여부	/ 40점
	우대가점		○ 사회형평적인력 가점	/ 5~10점
○ 기타 가점			/ 15점 이내	
평가점수 합계				/ 125점

※ 평가점수기준표

구분	배점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일반문항	12점	10점 이상	7~9점	4~6점	2~3점	2점 미만
경험 혹은 경력사항 기술	40점	32점 이상	23~31점	14~22점	5~13점	5점 미만

[붙임8] 면접시험 평가표

면접시험 평가표

수험번호		심사위원	(서명 또는 인)
구 분	주요 관찰사항		평정점수
용모·품행 및 성실성	○ 복장(머리, 옷매무새 등)은 단정한가? ○ 응답자세, 시선, 예의범절은 바른가? ○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지니고 있는가? ○ 상호존중과 배려에 관한 의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침착성과 적극성을 겸비하고 있는가? ○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있는가? ○ 발전가능성이 있는가?		/ 15점
의사발표의 정확성 및 논리성	○ 의사표현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는가? ○ 질문에 대해 논리정연하게 설명하는가? ○ 주관이 뚜렷한가?		/ 15점
전문지식 및 일반교양	○ 지원분야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일반교양 및 상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15점
공공기관 직원으로서의 자질	○ 가치관이 우리기관의 업무와 일치하는가? ○ 우리기관에 대한 지식수준은 어느 정도인가? ○ 협동심과 사회성이 좋은가?		/ 20점
인성 및 적성	○ 인성 및 적성의 적절성은?		/ 20점
우대가점	○ 사회형평적 인력 가점		/ 3~10점
평가점수 합계			/ 110점

※ 평가점수기준표

구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배점(20점)	18점 이상	16~17점	14~15점	12~13점	12점 미만
배점(15점)	14점 이상	12~13점	10~11점	9점	9점 미만

[붙임9] 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축산물품질평가원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